

변경대비표(일반및자펀드)

1. 대상 펀드:

no.	펀드명	가입 자격	모펀드 해외 위탁 운용역	투자 대상 자산	모펀드 투자 대상 자산	결 산	변 동 성	변경 사항
1	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)	○	-	-	-	-	-	-
2	미래에셋 BRICs 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주 3)	-	주 1)	-	-	-
3	미래에셋 BRICs 업종대표장기주택마련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주 3)	-	주 1)	-	-	-
4	미래에셋 BRICs 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주 3)	-	주 1)	-	-	-
5	미래에셋 EasternEURICs 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주 3)	-	주 1)	-	-	-
6	미래에셋 Eastern 유라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주 4)	-	-	-	-	-
7	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헬스케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주 1)	-	-	-	-	-
8	미래에셋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주 1)	-	-	-	-	-
9	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자투자신탁 G1 호(주식)	-	주 2)	-	-	-	-	-
10	미래에셋솔로몬플래너증권자투자신탁 G1 호(주식)	-	주 2)	-	-	-	-	-
11	미래에셋아내사랑글로벌이머징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주 3), 주 4)	-	주 1), 주 3)	-	-	-
12	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주 4)	-	주 3)	-	-	-
13	미래에셋연금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주 1)	-	-	-	-	-
14	미래에셋연금인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주 3)	-	주 1)	-	-	-
15	미래에셋연금팬아시아권슈머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주 5)	-	-	-	-	-
16	미래에셋우리아이친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주 3)	-	주 1)	-	-	-
17	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자투자신탁 G1 호(주식)	-	주 2)	-	-	-	-	-
18	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 3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주 3)	-	주 1)	-	-	-
19	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리치플랜 3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주 3)	-	주 1)	-	-	-
20	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리치플랜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주 3)	-	주 1)	-	-	-
21	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주 3)	-	주 1)	-	-	-
22	미래에셋퇴직플랜 BRICs 업종대표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주 3)	-	주 1)	-	-	-
23	미래에셋퇴직플랜 BRICs 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주 3)	-	주 1)	-	-	-
24	미래에셋퇴직플랜 G1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주 3), 주 4)	-	주 1), 주 3)	-	-	-
25	미래에셋퇴직플랜 G2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주 3), 주 4)	-	주 1), 주 3)	-	-	-
26	미래에셋퇴직플랜 G3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주 3), 주 4)	-	주 1), 주 3)	-	-	-
27	미래에셋퇴직플랜 G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주 3), 주 4)	-	주 1), 주 3)	-	-	-
28	미래에셋퇴직플랜 G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주 3), 주 4)	-	주 1), 주 3)	-	-	-

no.	펀드명	가입 자격	모펀드 해외 위탁 운용역	투자 대상 자산	모펀드 투자 대상 자산	결 산	변 동 성	변경 사항
29	미래에셋퇴직플랜 G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-	주 3), 주 4)	-	주 1), 주 3)	-	-	-
30	미래에셋퇴직플랜 G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주 3), 주 4)	-	주 1), 주 3)	-	-	-
31	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헬스케어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주 1)	-	-	-	-	-
32	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 2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주 4)	-	주 3)	-	-	-
33	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주 4)	-	주 3)	-	-	-
34	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주 4)	-	주 3)	-	-	-
35	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주 4)	-	주 3)	-	-	-
36	미래에셋퇴직플랜이머징업종대표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주 3), 주 4)	-	주 1), 주 3)	-	-	-
37	미래에셋퇴직플랜친디아업종대표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주 3)	○	주 1)	-	-	-
38	미래에셋팬아시아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주 5)	-	-	○	○	-
39	미래에셋코리아레버리지 2.0 증권자투자신탁(주식-파생재간접형)	-	-	○	주 2)	○	○	9)
40	미래에셋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-	-	○	-	○	○	7), 8), 9)
41	미래에셋미국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○	-	○	○	-
42	미래에셋스마트롱숏 5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-	-	○	-	○	○	9)
43	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○	-	○	○	9)
44	미래에셋 100 세시대 QV 퇴직연금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	-	-	-	-	○	○	-
45	미래에셋 100 세시대 QV 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-	○	○	9)
46	미래에셋 MSCIAC 월드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H)	-	-	-	-	○	○	9)
47	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-	-	-	-	○	-	-
48	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-	-	-	-	○	○	-
49	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자투자회사(채권혼합)	-	-	-	-	○	○	-
50	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 11 호	-	-	-	-	○	-	-
51	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(주식혼합)	-	-	-	-	○	-	-
52	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투자신탁(재간접형)	-	-	-	-	○	-	-
53	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-	-	-	-	○	-	-
54	미래에셋우리아이 3 억만들기증권자투자신탁 G1 호(주식)	-	-	-	-	○	-	-
55	미래에셋자산배분 TDF2025 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- 재간접형)	-	-	-	-	○	○	-
56	미래에셋자산배분 TDF2035 증권자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	-	-	-	-	○	○	-
57	미래에셋자산배분 TDF2045 증권자투자신탁(주식혼합- 재간접형)	-	-	-	-	○	○	-

2. 변경 사항:

- 1) 클래스 가입자격 추가
- 2) 모투자신탁 해외 위탁 운용역 변경
- 3) 투자대상자산 추가
- 4)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추가
- 5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
- 6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- 7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- 8) 법 개정사항 반영
- 9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3. 효력발생예정일: 2023년 06월 16일 (금)

4. 변경 내용:

1) 클래스 가입자격 추가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가입자격>	종류 F <생략> <신설>	종류 F <생략> - 투자일임업자가 운용하는 일임계좌를 통해 수익증권을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

2) 모투자신탁 해외 위탁 운용역 변경

[투자설명서]

주1)

미래에셋글로벌헬스케어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5. 라. 해외집합 투자업자의 운용전문인 력에 관한 사항	<u>Rahul Chadha</u>	<p>※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팀 어프로치 에 의한 신중한 의사결정을 투자원칙으로 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. 이에 특정개인 으로 운용역을 기재하기 보다 운용팀으로 기재하였습니다.</p> <p>※ 운용팀에 관한 사항</p> <p>- 운용조직 명 : <u>Equity Investment Unit</u></p> <p>- 운용조직 역할 : <u>Equity Investment Unit은 주식 운용 및 애널리스트로 구성 되어 있으며, 아시아태평양 시장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용 및 리서치 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</u></p>

주2)

미래에셋솔로몬플래너증권모투자신탁G(주식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5. 라. 해외집합 투자업자의 운용전문인 력에 관한 사항	<u>Rahul Chadha</u>	<p>※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팀 어프로치 에 의한 신중한 의사결정을 투자원칙으로 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. 이에 특정개인 으로 운용역을 기재하기 보다 운용팀으로 기재하였습니다.</p> <p>※ 운용팀에 관한 사항</p> <p>- 운용조직 명 : <u>Equity Investment Unit</u></p>

		- 운용조직 역할 : <u>Equity Investment Unit</u> 은 주식 운용 및 애널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, 아시아태평양 시장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용 및 리서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
--	--	--

주3)

미래에셋인디아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5. 라. 해외집합 투자업자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<u>Rahul Chadha</u>	<p>※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팀 어프로치에 의한 신중한 의사결정을 투자원칙으로 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. 이에 특정개인으로 운용역을 기재하기 보다 운용팀으로 기재하였습니다.</p> <p>※ 운용팀에 관한 사항</p> <p>- 운용조직 명 : <u>Equity Investment Unit</u></p> <p>- 운용조직 역할 : <u>Equity Investment Unit</u>은 주식 운용 및 애널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, 아시아태평양 시장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용 및 리서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</p>

주4)

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5. 라. 해외집합 투자업자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<u>Rahul Chadha</u>	<p>※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팀 어프로치에 의한 신중한 의사결정을 투자원칙으로 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. 이에 특정개인으로 운용역을 기재하기 보다 운용팀으로 기재하였습니다.</p> <p>※ 운용팀에 관한 사항</p> <p>- 운용조직 명 : <u>Equity Investment Unit</u></p> <p>- 운용조직 역할 : <u>Equity Investment Unit</u>은 주식 운용 및 애널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, 아시아태평양 시장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용 및 리서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</p>

주5)

미래에셋팬아시아컨슈머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
<p>제 2 부. 5. 라. 해외집합 투자업자의 운용전문인 력에 관한 사항</p>	<p><u>Rahul Chadha</u></p>	<p>※ <u>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팀 어프로치에 의한 신중한 의사결정을 투자원칙으로 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. 이에 특정개인</u> <u>으로 운용역을 기재하기 보다 운용팀으로</u> <u>기재하였습니다.</u> ※ <u>운용팀에 관한 사항</u> - <u>운용조직 명 : Equity Investment Unit</u> - <u>운용조직 역할 : Equity Investment Unit은 주식 운용 및 애널리스트로 구성</u> <u>되어 있으며, 아시아태평양 시장 전반에</u> <u>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용 및 리서치</u> <u>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</u></p>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3) 투자대상자산 추가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p>제 15 조(투자대상자산 등)</p>	<p>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1. ~2. <생략> <u>3. <신설></u></p> <p>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1. ~2. <생략> <u>3. <신설></u></p> <p>4. 제 1 호 <u>및 제 2 호</u>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</p>	<p>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1. ~2. <생략> <u>3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)</u>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1. ~2. <생략> <u>3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)</u></p> <p>4. 제1호 <u>내지 제3호</u>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</p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p>제 2 부. 8. 가. 투자대상</p>	<p>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u><신설></u> <생략> <u><신설></u></p>	<p>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u>환매조건부매수</u> <생략> <u>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</u></p>

		<u>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</u>
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u>환매조건부매수</u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<생략> <u>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</u>

4)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추가

주1)

미래에셋인디아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[제2부 별첨1]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. 나. (1) 투자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u>환매조건부매수</u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 <생략> <u>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</u>

주2)

미래에셋코리아레버리지2.0증권모투자신탁(주식-파생재간접형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[제2부 별첨1]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. 나. (1) 투자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]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u>환매조건부매수</u>] <생략> <u>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</u>

주3)

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[제2부 별첨1]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. 나. (1) 투자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u>환매조건부매수</u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 <생략>

		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
--	--	---

5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요약정보<투자비용>	-	<u>총보수·비용(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) 업데이트</u>
제 2 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-	<u>총보수·비용(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) 및 증권거래비용 등 업데이트</u>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-	<u>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</u>
제 5 부. 4. 가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	-	<u>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업데이트</u>

6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
펀드명	변경 전 등급	변경 후 등급	변경 전(%)	변경 후(%)
미래에셋100세시대QV퇴직연금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	4	4	<u>8.31</u>	<u>6.76</u>
미래에셋100세시대QV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22.85</u>	<u>17.65</u>
미래에셋MSCIAC월드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H)	<u>2</u>	<u>3</u>	<u>19.23</u>	<u>14.79</u>
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<u>2</u>	<u>3</u>	<u>15.31</u>	<u>11.78</u>
미래에셋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<u>3</u>	<u>4</u>	<u>12.96</u>	<u>9.02</u>
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자투자회사(채권혼합)	4	4	<u>6.52</u>	<u>5.13</u>
미래에셋미국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21.2</u>	<u>20.38</u>
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5	5	<u>4.33</u>	<u>3.84</u>
미래에셋자산배분TDF2025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- 재간접형)	3	3	<u>10.2</u>	<u>10.79</u>
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5증권자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	2	2	<u>15.35</u>	<u>15.42</u>
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5증권자투자신탁(주식혼합- 재간접형)	2	2	<u>17.12</u>	<u>17.08</u>
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21.79</u>	<u>22.86</u>
미래에셋코리아레버리지 2.0 증권자투자신탁(주식-파생재간접형)	1	1	<u>47.54</u>	<u>36.65</u>
미래에셋팬아시아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17.34</u>	<u>17.98</u>

7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조(용어의 정의)	<신설>	- “고난도금융투자상품”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

제53조(고난도금융투자 상품)	<신설>	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------------------	------	---

8) 법 개정사항 반영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	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<u>투자신탁재산으로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15조(투자대상자산 등)	-채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 -자산유동화증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	<삭제>
제17조(운용 및 투자 제한)	2. <생략> 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<생략></u>	2. <생략> 나. <삭제>
제42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① <u>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u> ②~③ <생략> <신설>	① <u>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</u> ②~③ <생략> ④ <u>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</u>

		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 8. 가. 투자대상	-채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<생략> -자산유동화증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<생략>	<삭제>
제2부 8. 나. 투자제한	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</u> , <생략>	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나. <삭제>

9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4부 1. 가. 회사의 개요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- <u>일반사무관리회사</u> : <u>미래에셋펀드서비스</u> - <u>신탁업자</u> : 국민은행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<삭제>
제4부 4.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	회사명: <u>미래에셋펀드서비스(주)</u>	회사명: <u>한국펀드파트너스(주)</u>

*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계약 및 정관 조항 번호는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, 변경 내용은 동일함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